
「스마트폰 앱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2015. 8. 6.

[순 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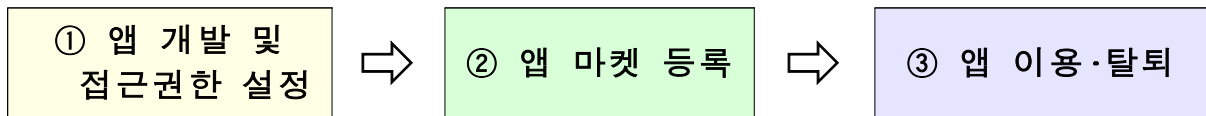
① 가이드라인 제정의 목적	1
② 스마트폰 앱 단계별 준수사항	2
1. [앱 개발시 권한 설정 단계] 서비스에 필요한 권한으로 최소화 ...	2
가. 운영체제(OS) 사업자	2
나. 앱 개발자와 서비스 제공자	4
2. [앱 마켓 등록 단계] 이용자가 알기 쉽게 고지	5
가. 앱 마켓 사업자	5
나. 앱 개발자와 서비스 제공자	6
☞ 선택재 앱의 경우	7
3. [앱 서비스 제공·탈퇴 단계] 동의 및 탈퇴 절차 명확화	7
가. 앱 개발자 및 서비스 제공자	7
나. 운영체제(OS) 사업자	9

1. 가이드라인 제정의 목적

□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투명성 확보를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스마트폰 이용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스마트폰 앱 관련 단계별·사업자별 개인정보보호 기준을 제시함

- ① 앱이 이용자의 스마트폰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 (앱 권한)를 서비스에 필요한 범위 내로 최소화
- ② 앱 마켓 등록 시 앱 권한 정보와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알기 쉽게 공개하도록 하여 이용자가 내려 받을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
- ③ 개인정보 취급과 관련한 동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편리하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서비스 탈퇴 절차 등을 쉽게 개선

< 스마트폰 앱 서비스 이용 절차 >



① 앱이 정상적으로 동작하기 위해서는 운영체제(안드로이드, iOS)의 환경에 맞추어 앱 권한 설정이 되어 있어야 하고, 설정된 권한 범위 내에서 스마트폰 이용자의 단말기 저장 정보 및 기능에 접근하여 동작이 가능

※ 앱 권한 설정만으로 이용자의 정보를 수집(전송)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실제 수집(전송) 시에는 이용자의 동의가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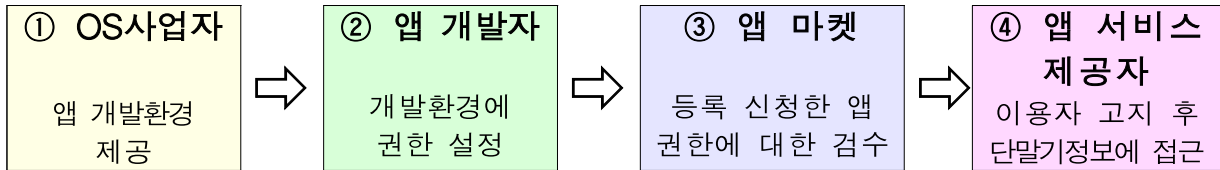
② 구글 플레이(구글), 앱스토어(애플), 원스토어(이통사), N스토어(네이버) 등 앱 마켓에 개발된 앱을 등록하여 이용자가 내려 받아 이용할 수 있음

③ 이용자는 앱 마켓에서 내려 받은 앱을 실행하고, 필요한 경우 동의 절차를 거쳐 서비스를 이용한 후 서비스 탈퇴 또는 동의 철회를 거쳐 종료

2. 스마트폰 앱 단계별 준수사항

1. [앱 개발시 권한 설정 단계] 서비스에 필요한 권한으로 최소화

< 앱 권한 설정 개념도 >



- ※ OS사업자 : 스마트폰에서 앱이 동작할 수 있는 운영체제를 제공(예: 구글 안드로이드, 애플 iOS)
- ※ 앱 개발자 : OS사업자가 제공한 운영체제에 맞추어 스마트폰에서 동작하는 앱을 개발
- ※ 앱 마켓 : 이용자와 앱 서비스 제공자 사이에서 앱이 거래될 수 있는 장터를 제공
(예: 애플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윈스토어, N스토어 등)
- ※ 앱 서비스 제공자 : 앱 개발자가 설계한 앱을 앱 마켓에 올려 이용자에게 서비스
(예: 다음카카오(카카오톡), SK플래닛(T맵) 등)

가. 운영체제(OS) 사업자

① (최소한의 앱 권한 설정 개발환경 제공) 앱 개발자들이 이용자의 스마트폰 단말기장치*와 저장된 정보**(이하 '단말기정보 등')에 불필요하게 접근하지 않도록 권한(permission) 관리체계를 명확히 하여야 함

- 앱 개발자에게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SDK), 응용프로그램 규격(API) 등의 개발환경이나 도구를 제공할 때에는 사전에 개인정보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기술적·관리적 취약점을 제거하여야 함

* 마이크·카메라·Wi-Fi·셀룰러 위치 등, ** 주소록·SMS·캘린더·사진첩 등

- ☞ SDK(Software Development Kit) 운영체제(OS) 등에 맞추어 응용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앱) 개발자에게 제공하는 개발도구의 집합
- ☞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응용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체제나 프로그래밍 언어가 제공하는 기능을 제어할 수 있게 만든 형식이나 규격
· OS사가 제공하는 API는 앱이 단말기정보 등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규격을 정함

② (접근이 필요한 시점에 고지) 앱이 동작을 위해 이용자의 단말기 정보 등(연락처, 사진첩 등)에 접근해야 하는 경우에는 포괄적으로 동의를 요구하지 않고, 접근이 필요한 최초 시점에 이용자에게 접근 허용 여부를 고지하여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③ (앱 접근 권한의 목적을 알기 쉽게 안내) 이용자에게 알리는 앱 권한 설정의 목적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함

< 접근 권한 별 목적 안내(예시) >

접근 권한	권한이 필요한 이유(예시)
위치	SNS 위치 공유, 주변 맛집 찾기
카메라	SNS 서비스 사진 업로드, 사진 전송, 사진촬영 즉시 업로드
마이크로폰	보이스 톡 기능 이용
연락처	SNS 친구추가, 연락처 공유 기능
캘린더	이용자가 지정한 온라인 캘린더 동기화
전화	앱에서 바로 전화걸기
SMS	문자 메시지 인증번호를 자동으로 입력해 주는 기능
웨어러블/활동/센서	지문인식, 심박수 측정 등 센서 사용
미리 알림	미리알림 데이터 베이스 읽기, 쓰기
사진	SNS 서비스 사진 업로드, 사진 전송

- ④ (앱 접근 권한을 쉽게 변경할 수 있는 메뉴 제공) 이용자가 이용 과정에서 앱 접근권한을 쉽게 변경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함



나. 앱 개발자와 서비스 제공자

- ① (서비스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권한 설정) 앱 개발자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앱 접근 권한을 설정하여야 함
- 이용자가 접근 권한을 허용하였다고 하여 단말기정보 등으로부터 허용된 권한 관련 모든 정보가 즉시 수집(전송)되는 것은 아니며,
 -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은 범위 내에서, 단말기 정보 등에 접근한다는 것을 고지·승인 후 수집(전송)된다는 사실을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명시하여야 함

☞ 과도한 앱 접근 권한을 부여받아 이용자의 동의없이 단말기정보 등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관련 매출액의 3% 이하의 과징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함

- ② (앱 권한 설정 변경 메뉴 제공) 이용자에게 앱 권한 설정을 고지하고 확인받은 경우에도 사후적으로 이용자가 앱 권한 허용 여부를 스스로 변경할 수 있는 메뉴를 제공하고 절차를 안내하여야 함



2. [앱 마켓 등록 단계] 이용자가 알기 쉽게 고지

가. 앱 마켓 사업자

- ① (앱 개발자를 위한 공간·환경의 제공) 앱 개발자·서비스 제공자가 앱 등록 시 “앱 권한의 범위와 서비스에 필요한 이유에 대한 설명”, “개인정보취급방침”, “이용자의 권리의무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개발정보” 등을 공개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야 함
- ② (앱 권한 검수 절차 운영) 앱 개발자가 불필요한 앱 권한을 설정·운영하지 않도록 자체 검수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함
- 등록된 앱에 대한 권한 관련으로 이용자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이를 앱 개발자 및 서비스 제공자에게 확인하여 개선요청, 삭제하는 등 자율규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함

예시	설명
	<p>① (웹페이지 방문) 앱 서비스 제공자의 홈페이지를 안내하여 이용자가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p> <p>② (이용약관) 이용자가 앱 서비스 이용 전에 이용 여부 판단 정보를 제공 <small>※ 앱 서비스 이용 단계에서 이용약관 동의는 별도로 받아야 함</small></p> <p>③ (개인정보 취급방침) 이용자에게 개인 정보 취급 관련 정보를 제공</p> <p>④ (앱 권한 정보보기) 이용자 단말기 정보에 대한 앱 권한 정보를 제공</p> <p>⑤ (앱 마켓에 신고하기) 과도한 앱 권한 설정 등 앱 마켓의 정책에 부합하지 않은 앱에 대한 신고 기능 마련</p>

나. 앱 개발자와 서비스 제공자

- ① **(앱 권한 설정 및 접근 고지절차 확인)** 앱 마켓 등록 전에 개발된 앱이 “앱 권한 설정”, “단말기정보 등에 접근 시 이용자 고지절차 등”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함
- ② **(개인정보보호 법령준수 여부 확인)**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 수집·보관·이용·제공·파기 의무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함

구분	앱 마켓 등록 전 확인 사항
앱 권한 설정	앱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앱 권한을 설정 하고 있는가?
단말기 장치 등에 접근	이용자에게 앱 권한 및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사전에 알리는 절차 를 마련하였는가?
개인정보 보호 법령 준수 여부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 수집-보관-이용-제공-파기 의무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가?

☞ **선택재 앱의 경우 : 운영체제(OS) 사업자·통신사·제조사**

- 선택재 앱의 경우, “앱 마켓을 통해 내려받는 절차가 없으므로” 별도로 이용자에게 앱 권한 설정 내용을 알리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함

* (예시) ① 해당 선택재 앱 실행 시 첫 화면에 공개하는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통해 알리는 방법,
 ② OS 최초 구동 화면에서 안내하는 방법, 선택재 앱의 최초 실행 화면에서 안내하는 방법 등

3. [앱 서비스 제공·탈퇴 단계] 동의 및 탈퇴 절차 명확화

가. 앱 개발자 및 서비스 제공자

- ① (필수동의 사항에 대한 원클릭 동의) “서비스 이용약관”, “개인 정보 수집·이용(필수)” 등 필수동의 사항은 쉽게 확인하고 원클릭으로 동의받을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함

[필수동의 절차 명확화(예시)]

회원가입이 필요한 경우

필수동의 항목만 운영하는 경우

※ 아이디

※ 비밀번호

※ 비밀번호 재확인

※ 이름

※ 이메일

[필수] 서비스 이용약관 주요내용보기 전문보기

[필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전문보기

약관 및 개인정보 동의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만14세 미만 아동은 회원가입이 제한됩니다)

동의하고 회원가입

① (약관 주요내용보기) 중요한 사항은 주요내용보기에 포함하여 고지(약관규제법) 만약,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위치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과 관련한 약관 내용도 포함 가능

② (약관 전문보기) 이용약관 전문을 게시하여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전문보기) 법정고지사항을 간결하게 알리고 동의

목적	항목	보유기간
이용자 식별, 서비스 이행을 위한 연락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이메일	회원탈퇴 후 5일까지

※ “개인정보 취급방침” 전문을 고지하고 동의받는 것은 적법한 동의로 볼 수 없음 유의

④ (원클릭 동의) 필수동의 항목인 서비스 이용약관 동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는 원클릭으로 동의 가능함

- ② (선택동의 사항에 대한 별도 동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마케팅 활용 동의” 등 선택동의 사항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에는 필수동의 사항과는 별도의 절차를 마련하여 이용자가 동의 여부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함

[선택동의 절차 명확화(예시)]

선택동의 사항을 운영하는 경우

[선택] 개인정보 마케팅 활용 동의 ①

목적	항목	보유기간	동의여부
신규서비스 안내 등 마케팅 활용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회원탈퇴 후 5일까지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안함 <input type="checkbox"/>
상품추천 등 맞춤형 광고	쿠키 정보	회원탈퇴 후 5일까지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안함 <input type="checkbox"/>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서비스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선택]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②

제공 받는자	목적	항목	보유기간	동의여부
㈜○○○	주○○○ 마케팅	이름 휴대전화 번호	동의일 부터 1년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안함 <input type="checkbox"/>
㈜○○○	고객 맞춤형 상품 추천	아이디 쿠키 검색이력	동의일 부터 1년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안함 <input type="checkbox"/>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서비스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① (마케팅 활용 동의) 이메일, 휴대전화 번호, 쿠키 정보 등을 마케팅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별도 동의 절차를 마련해야 하고

- 이용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② (제3자 제공 동의) 개인정보를 제3자의 서비스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선택동의 사항으로 분류하여 별도 동의 절차를 마련해야 하고,

- 이용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15.12.23.이후에는 3천만원으로 상향)

- ③ (탈퇴메뉴를 찾기 쉽게 구성) 앱 화면을 통해 이용자가 쉽게 탈퇴 메뉴를 찾을 수 있도록 앱 실행 첫 화면 등에 배치하고,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연락 가능한 연락처를 명시하여야 함

- 이용자가 스마트폰 상에서 앱을 삭제하더라도 개인정보가 앱 서비스 제공자에게 남아있는 경우, 회원탈퇴 등 별도 요청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개인정보 취급방침 등을 통해 안내하여야 함

나. 운영체제(OS) 사업자

- (앱 삭제시 관련 정보도 삭제됨을 안내) 이용자가 해당 앱을 삭제하는 경우 이용자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관련 정보 중 실제 삭제되는 정보의 범위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함

앱 삭제 안내(예시)	
	<p>이용자가 사용하던 앱을 삭제하면 스마트폰 안에 저장된 데이터(대화내용, 설정 정보 등)도 함께 삭제되는 경우와 같이 이용자에게 중요한 사항은 앱 삭제 전에 이용자에게 명확하게 알려야 함</p>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법적 의무사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법령 해설서」,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해설서」, 「온라인 개인정보 취급 가이드라인」 참조(www.i-privacy.kr/자료실)